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55
----------	------

2025. 10. 17.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3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9. 3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10. 17.)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야영장 주요 이용층인 가족 단위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성적 마케팅을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명칭을 “배알도 별빛 야영장”으로 변경하고,
-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이용료 기준 마련

나. 주요 내용

-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을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변경함.
(안 제2조제1호)
- 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규격별 시설 이용료와 카라반 시설 이용료를 별표 1에 추가함. (안 제6조제1항 별표 1)

3. 검토 의견

가. 주요 내용 검토

- 야영장 명칭 변경 및 시설 이용료 수정 (안 제6조제1항 별표 1)
 -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을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변경
 -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이용료 변경

나. 검토 결과

- 이 개정 조례안은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의 명칭을 배알도 별빛 야영장으로 변경하고 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상위 법령이나 기존 조례, 조문 체계와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을 ““배알도 별빛야영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 별빛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야영장	5*6m	1박	30,000	35,000	14:00 ~ 마 지 막 사 용 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자동차 야영장	5*7m	1박	35,000	40,000		
	5*7.5m	1박	35,000	40,000		
	7*9m	1박	40,000	50,000		
	8*10m	1박	50,000	60,000		
카라반	4-5인용	1박	100,000	140,000		
전기이용료		1박	3,000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1박	35,000	40,000	14:00 ~ 마 지 막 사 용 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5시간	20,000	25,000		
카라반	4-5인용	1박	100,000	140,000		
전기이용료		1박	3,000			

3. 구룡산 숲속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야영장	4*5m	1박	25,000	30,000	14:00 ~ 마 지 막 사 용 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 원 추가요금 징수
		5시간	15,000	20,000		
	7*8m	1박	40,000	50,000		
		5시간	25,000	30,000		
트리 하우스	D6m 7*4.5m	1박	80,000	100,000		
		1박	100,000	120,000		
인디언 텐트	D6m	1박	60,000	80,000		
		5시간	40,000	50,000		
전기이용료		1박	3,000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u>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u>”</p> <p>2. 3. (생략)</p>	<p>제2조(위치) ----- ----- ----- -----</p> <p>1. ----- “<u>배알도 별빛야영장</u>”</p> <p>2. 3.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시설이용료</u>(제6조제1항 관련)</p> <p>1. <u>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u>시설이용료</u>(제6조제1항 관련)</p> <p>1. <u>배알도 별빛야영장</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시설명</th> <th rowspan="2">규격</th> <th colspan="3">이용료(1박)</th> <th rowspan="2">이용시간</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신설></th> <th>비수기</th> <th>성수기, 주말</th> </tr> </thead> <tbody> <tr>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 rowspan="6" style="vertical-align: top;">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신설> </td> <td></td> </tr> <tr> <td></td> <td>4*4m</td> <td><신설></td> <td>20,000</td> <td>25,000</td> <td></td> </tr> <tr> <td>자동차 야영장</td> <td>5*6m</td> <td><신설></td> <td>30,000</td> <td>35,000</td> <td></td> </tr> <tr> <td></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td> </tr> <tr> <td></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td> </tr> <tr> <td></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신설></td> <td></td> </tr> <tr> <td>전기이용료</td> <td><신설></td> <td></td> <td>3,0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시설명	규격	이용료(1박)			이용시간	비고	<신설>	비수기	성수기, 주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신설>			4*4m	<신설>	20,000	25,000		자동차 야영장	5*6m	<신설>	30,000	35,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전기이용료	<신설>		3,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th> <th rowspan="2"></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이용료</th> <th rowspan="2">이용시간(1박)</th> <th rowspan="2"></th> </tr> <tr>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야영장</td> <td>5*6m</td> <td>1박</td> <td>30,000</td> <td>35,000</td> <td></td> <td></td> </tr> <tr> <td></td> <td>5*7m</td> <td>1박</td> <td>35,000</td> <td>40,000</td> <td></td> <td></td> </tr> <tr> <td></td> <td>5*7.5m</td> <td>1박</td> <td>35,000</td> <td>40,000</td> <td></td> <td></td> </tr> <tr> <td></td> <td>7*9m</td> <td>1박</td> <td>40,000</td> <td>50,000</td> <td></td> <td></td> </tr> <tr> <td></td> <td>8*10m</td> <td>1박</td> <td>50,000</td> <td>60,000</td> <td></td> <td></td> </tr> <tr> <td>카라반</td> <td>4-5인용</td> <td>1박</td> <td>100,000</td> <td>140,000</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1박</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4. 기준인원: 4인 (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 당 (성인) 10,000원 추가 요금 징수</p>			구분	이용료		이용시간(1박)		----	----	야영장	5*6m	1박	30,000	35,000				5*7m	1박	35,000	40,000				5*7.5m	1박	35,000	40,000				7*9m	1박	40,000	50,000				8*10m	1박	50,000	60,000			카라반	4-5인용	1박	100,000	140,000					1박	-----	-----		
시설명			규격	이용료(1박)				이용시간	비고																																																																																																								
	<신설>	비수기		성수기, 주말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신설>																																																																																																												
	4*4m	<신설>	20,000	25,000																																																																																																													
자동차 야영장	5*6m	<신설>	30,000	35,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전기이용료	<신설>		3,000																																																																																																														
		구분	이용료		이용시간(1박)																																																																																																												
			----	----																																																																																																													
야영장	5*6m	1박	30,000	35,000																																																																																																													
	5*7m	1박	35,000	40,000																																																																																																													
	5*7.5m	1박	35,000	40,000																																																																																																													
	7*9m	1박	40,000	50,000																																																																																																													
	8*10m	1박	50,000	60,000																																																																																																													
카라반	4-5인용	1박	100,000	140,000																																																																																																													
		1박	-----	-----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 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1박	35,000	40,000	14:00 ~ 마 지 막 사 용 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 당 (성인) 10,000원 추가 요금 징수
		5시간	20,000	25,000		
전기이용료		<신설>	3,000			
카라반	4~5 인용	<신설>	100,000	140,000		

3. 구룡산 숲속야영장

(단위 :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 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야영장	4*5m	1박	25,000	30,000	14:00 ~ 마 지 막 사 용 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 당 (성인) 10,000원 추가 요금 징수
		5시간	15,000	20,000		
	7*8m	1박	40,000	50,000		
		5시간	25,000	30,000		
트리 하우스	D6m	<신설>	80,000	100,000		
	7*4.5m	<신설>	100,000	120,000		
인디언 텐트	D6m	1박	60,000	80,000		
		5시간	40,000	50,000		
전기이용료		<신설>	3,000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 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카라반	4-5 인용	1박	100,000	140,000		
전기이용료		1박	3,000			

3. 구룡산 숲속야영장

(단위 :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 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카라반	4-5 인용	1박				
전기이용료		1박				

(현행+개정안)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 조례에 적용되는 광양시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태인동 1630-12번지 일원에 위치한 ~~“배알도근린공원 야영장”~~ “배알도 별빛야영장”
2. 광양시 다압면 1548-1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계곡 야영장”
3. 광양시 황길동 산45-5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봉산 숲속야영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야영테크,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야영장을 관리·운영하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약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시설 이용 예

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그 사유와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거나 무단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9조제4항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6조(시설이용료)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야영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

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료 배상·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및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시설이용료 전액 반환

2. 관리자 또는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 및 반환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관리 및 위탁)** ① 야영장은 시장이 관리하고 운영한다. 다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 야영장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③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위탁 등) 시장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시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해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제13조(수탁자의 관리의무 등)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

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관리 부서 지정)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은 시설 조성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6조제1항 관련)

1. 배알도 별빛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야영장	5*6m	1박	30,000	35,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자동차 야영장	5*7m	1박	35,000	40,000		
	5*7.5m	1박	35,000	40,000		
	7*9m	1박	40,000	50,000		
	8*10m	1박	50,000	60,000		
카라반	4-5인용	1박	100,000	140,000		
전기이용료		1박	3,000			

2. 금천계곡 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자동차 야영장	5*8m	1박	35,000	4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카라반)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원 추가요금 징수
		5시간	20,000	25,000		
카라반	4-5인용	1박	100,000	140,000		
전기이용료		1박	3,000			

3. 구룡산 숲속야영장

(단위: 원)

시설명	규격	이용료			이용시간 (1박)	비 고
		구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야영장	4*5m	1박	25,000	30,000	14:00 ~ 마지막 사용일 11:00	1. 비수기 :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기간 2. 성수기 :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 주 말 :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 4. 기준인원: 4인 (트리하우스, 인디언텐트) ※ 기준인원 초과시 1인당(성인) 10,000 원 추가요금 징수
		5시간	15,000	20,000		
	7*8m	1박	40,000	50,000		
		5시간	25,000	30,000		
트리 하우스	D6m 7*4.5m	1박	80,000	100,000		
		1박	100,000	120,000		
인디언 텐트	D6m	1박	60,000	80,000		
		5시간	40,000	50,000		
전기이용료		1박	3,000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별표 2]

시설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제7조제1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광양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p>전액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족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진흥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100분의 30 감액</p>

[별표 3]

시설이용료 배상 및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이용 기간	유 형	배상 및 반환기준
관리자 귀책	성수기 및 주말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7~9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비수기	·이용예정일 3~6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1~2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비수기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자 귀책	성수기 및 주말	·이용예정일 7~9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예정일 3~6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비수기	·이용예정일 1~2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40% 배상
	비수기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1~4일 전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비수기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성수기 및 주말	·이용예정일 7~9일 전 취소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3~6일 전 취소	·이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이용예정일 1~2일 전 취소	·이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의 4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이용예정일 5일 전 취소 또는 계약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1~4일 전 취소	·이용료 10% 공제 후 환급
	비수기	·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이용료 20% 공제 후 환급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아영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제8조제2항제1호 관련)는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함.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봄.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제4항 관련)

이곳 000 야영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이용자 한 분 한 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1. 입장 및 퇴장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야영장 이용자 수칙 미준수 및 관리자의 안내에 불응 시에는 강제 퇴장 조치 됩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이며, 야영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용료는 선불입니다.

3. 장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 이용을 금합니다.

4. 차량이용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 차량통행은 서행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 이용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는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음

- 소음이 심하지 않게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앰프(노래방 기기) 이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정숙 시간은 22: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7. 동물

- 모든 동물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며 항상 사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야영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야영장 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용하고 남은 숯은 반드시 잔불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야영장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전기시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 이용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과도한 전기 이용으로 인하여 야영장 전체의 전기가 다운될 염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이용에 제한을 두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